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명		• iM에셋타이거포커스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Ce
상품 주요 내용		**※ 아래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투자 전 펀드의 주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 이 펀드는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에 따른 위험	• 이 펀드의 (간이)투자설명서의 주요위험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준가격관련 위험,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 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 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 환매주기 관련 위험, 투자신탁 해지 위험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수수료 등 제반비용	• 판매 수수료: 없음 • **총 보수: 연 0.99%** (운용 연 0.45%, 판매 연 0.47%, 수탁 연 0.04%, 일반사무관리 연 0.03%)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MMF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증권·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	Money Market Fund의 약자로서 펀드 재산의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
O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아래 내용은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내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펀드는 원금의 전액 손실이 가능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Q2. 펀드를 가입할때 부담해야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펀드의 운용구조를 살펴보면, 판매사,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가 관여하게 되며 이러한 기관별로 **보수 및 수수료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입금 시 차감되어 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판매보수, 운용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은 투자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순자산총액 산출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

Q3. 펀드를 신규·매입·환매의 취소가 가능한 시간은?

펀드의 **신규, 매입, 환매의 취소 가능한 시간은 개별펀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취소 가능한 시간이 지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며 **'폐쇄형'으로 설정된 펀드의 경우 환매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펀드 환매 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들면, 편입된 주식부분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채권이자, 채권매매차익, 주식 배당소득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펀드의 결산, 재투자는 무엇인가요?

결산은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산하여 이익금과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설정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되며 펀드별로 결산일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세금 등을 공제하고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이익분배금이라고 하며,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증권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합니다. 이익금 중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환매시까지 유보하게 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결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운용회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기반으로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 회사는 수익률의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6단계 투자위험등급에 따라 펀드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 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험등급 변동관련 유의사항

• 공모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운용회사의 결정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최초 투자시점 이후에도 수시로 펀드의 투자 위험도를 확인하고, 투자 및 보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펀드의 투자위험등급 정보는 판매사 및 운용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 공시사이트의 투자설명서(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성향별 투자적합 상품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집합투자증권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이하 상품	3등급 (다소높은위험) 이하 상품	4등급 (보통위험) 이하 상품	5등급 (낮은위험) 이하 상품	6등급 (매우낮은위험) 상품

*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시가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수익률이 위험을 대변하지 못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자산 기준에 따라 위험등급 산정함.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알림	**필수 사항**	• **매매신청, 결제, 실질투자수익률 등 안내** : App Push 및 카카오톡 알림 * App Push 알림이 불가할 경우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SMS 발송 * 카카오톡(알림톡) 알림이 불가할 경우 App Push 또는 SMS발송 • **수시공시/소규모해지 공시 안내 : 이메일**
	기타	• **펀드 관리 알림*:** App Push 및 카카오톡 알림 * 매매 펀드 및 약정 기반 주요내용 안내
서비스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akaopaysec.com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까지 통지하여 드립니다.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1. 연계·제휴서비스 내용 • 펀드 투자금 자동산정 서비스 * 동전 모으기: 카카오페이 결제 시 발생한 1천원 미만 잔돈(예: 1,200원 결제 시 800원이 잔돈)을 지정한 금융상품에 자동으로 투자 * 자동투자: 투자 주기(예: 매일, 주, 월 등)와 매회 투자 금액을 설정하여 지정한 금융상품에 정기적으로 투자 2. 연계·제휴서비스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당사: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 제휴사 제공, 계산된 금액을 고객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 • 제휴사(카카오페이): 고객의 조건설정 정보에 따른 카카오페이증권의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 제공(결제 금액 등) 3. 연계·제휴서비스의 제공기간 • 해당 서비스 해지 시까지 4. 연계·제휴서비스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약관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지사항에 게시.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한달 전까지 통지 5. 연계·제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실명 확인된 계좌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본인 명의로 카카오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법계약 해지사유가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단위형 펀드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 동 펀드는 청약철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031호
[심의일:2026.08.31]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소비자보호포털>공시/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자료열람청구)
자주묻는 질문	• 펀드 및 계좌, 출금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페이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고객센터>FAQ / 카카오페이 앱 > 전체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FAQ) > 투자 > 펀드)
금융사기 예방	• 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1.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2.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 3.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pd.fss.or.kr)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akaopaysec.com) 또는 고객센터(1600-8515)로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해지	• 펀드를 설정한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펀드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운용사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위의 3, 4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소규모펀드 임의해지)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중 처리 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의무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산운용사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펀드)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해지 관련 사항	• 투자자는 위의 임의해지 및 의무해지 발생시 1. 회사로부터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 공제한 금액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한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부동산임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10.01)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펀드코드: EN723]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아이엠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50% 초과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원본손실위험, 유동성위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재간접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M에셋 타이거 포커스 증권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 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 투자하며,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전략에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투자대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개요 및 구체적인 투자전략은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0%이내	0.970	0.450	0.81	1.136	215	335	459	722	1,4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470	0.950	1.18	1.636	168	341	520	896	1,9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0%이내	0.740	0.220	0.54	0.906	142	239	339	551	1,1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0.990	0.470	0.73	1.156	118	242	369	639	1,410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 제외)는 약 0.166%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2 ~ 26.10.01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025-10-29	-	-	-	-	46.98
비교지수(%)	2025-10-29	-	-	-	-	-
수익률 변동성(%)	2025-10-29	-	-	-	-	43.52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사모투자재간접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성호	1972	책임 (이사대우)	19개	5,768억원	-	-	-	-	22.5년
차영민	1991	부책임 (책임)	16개	2,257억원	-	-	-	-	1.3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솔루션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table>
<tr><td></td><td>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colspan="2">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
<tr><td>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기준가격 관련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집합투자업자가 공정가치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자산평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한 공정가치가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 시점 기준가격 적용일 및 환매대금 지급일 간의 기간이 오랜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매 청구 시점 대비하여 환매대금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td></tr>
<tr><td>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운용관련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레버리지전략(적은 금액으로 투자금액 이상의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분산투자 규제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운용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 배제되는 주요 운용규제>
- 동일종목 증권 투자제한(10%)
- 동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50%)
- 동일 집합투자증권 투자제한(20%)(ETF의 경우 30%)
- 각 집합투자기구에 편입하는 동일 집합투자증권 총수 제한(20%)</td></tr>
<tr><td>일반 사모집합 투자기구 정보접근 제약 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공시 의무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상품 및 운용과 관련된 정보접근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된 정보접근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성과보수 적용펀드 투자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징수되는 성과보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의 예상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채택하지 않은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현되는 수익률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td></tr>
<tr><td>환매주기 관련 위험</td><td>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제약 등을 이유로 환매 청구 시점부터 환매대금 지급일까지의 환매주기가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환매주기도 일반적인 투자신탁보다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유동화하기 원하는 고객이나, 오랜 환매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가치변동 위험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기 원하는 고객께서는 장기간의 환매주기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투자신탁 해지 위험</td><td>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 자세한 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td>매입 방법</td><td colspan="2">·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td></tr>
<tr><td>환매 방법</td><td colspan="2">·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13영업일(D+1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4영업일(D+1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14영업일(D+13)에</td></tr>
</table>

<table>
<tr><td>환매
수수료</td><td>해당사항 없음</td><td></td><td>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5영업일(D+14)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able></td></tr>
<tr><td>과세</td><td colspan="3"><table>
<tr><th>구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tr>
</table>※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아이엠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07-42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m-fund.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0월 22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1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1개월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집합투자기구, 기관투자자 또는 기금, 보험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액보험 특별계정 및 이를 수익자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전용 집합투자증권, 일정금액 이상 납입한 투자자 등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im-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m-fund.com)